

## 집중수업(집중이수제) 운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7조에 따른 집중수업 실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집중수업”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반 수업의 형태 및 제도를 말한다.

**제3조(집중수업 운영 목적)** 집중수업은 사회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학사 운영 및 유연한 수요맞춤형 학사제도와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교과목 특성에 맞는 수업운영 형태 다양화를 통한 수업효율성 극대화,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과목 개설절차)** 교육과정 운영상 집중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의 신청 및 개설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집중이수 교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는 개설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요구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제반서류를 갖춰 교무처에 신청한다.
2. 교과목 담당 교원은 집중이수 교과목의 요청시 교무처에 사전 협의를 통해 개설한다.
3. 학과에서 개설된 집중이수 교과목에 대해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과목 개설 및 운영 등)** ① 수업은 정규학기 중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의 승인을 거쳐 방학 중에도 개설할 수 있다.

- ② 집중이수 수업은 사전 공지를 통해 수강신청 전 학생이 수업의 형태를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업 운영은 평일 주·야간 시간 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 등 특정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④ 방학 중 개설되는 집중수업 과목은 정규학기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⑤ 기타 집중이수 시 1~4항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사항은 일반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성적처리)** ①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 ② 집중수업과목의 총 수업 시간의 25%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전염병 및 기타 중한 질병인 경우 과제로 출석 및 성적의 50%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수강학점 등의 표기)** 집중수업의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각각 해당 학년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의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으로 표기한다.

**제8조(수강신청)** 통상 학기 수강신청 규정에 준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폐강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수업방법)** 수업방법은 학칙 및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면수업, 원격수업, 혼합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집중수업과 관련하여 이 세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진행한다.

#### 부 칙

1. 본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